
아태지역 등록제도 및 인구동태통계 장관급 회의 결과 보고

2014. 12.

통계청 

인구 동향과

목 차

I. 회의 개요	1
II. 회의 안건	2
III. 주요 회의 내용	3
IV. 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사항	15
V. 검토사항	21
[참고1] 회의 개막사 및 환영사	22
[참고2] 장관급 선언문 내용	24
[참고3] 한국대표 발언 : CRVS 실천전략과 성과	32
[참고4] 한국대표 발언 : CRVS 추진시 우선순위	34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아태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 장관급 회의(The Ministerial Conference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 아태지역의 CRVS 관련 최초 장관급 선언문 채택을 위한 회의로 UNESCAP 회원국 및 국제기구(ADB, WHO, UNFPA, UNDP등)이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4. 11. 24.(월) ~ 11. 28.(금), UNCC(방콕)

□ 주관기관 : UNESCAP

□ 참석자

○ 해외 : Dr. Shamshad Akhte(ESCAP 사무총장), Ms. NoHoribe (UNFRA 아태본부장), WHO, Paris21 등 국제기구 대표, 일본·중국·호주 등 각국 대표 등 총 150여명 참석

○ 우리나라 : 사회통계국장, 손현정 주무관, 외교부 김서영 전문관

□ 주요일정

일자	주요 일정			
11.23.(일)	인천 출발 → 방콕(태국) 도착			
11.24.(월) ~28.(금)	아태지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 장관급 회의 참가			
	<table border="1"> <tr> <td>고위급 회의 (Senior officials segment)</td> </tr> <tr> <td>- 선언문 검토 및 국가별 실천 전략과 성과 발표</td> </tr> <tr> <td>각료급 회의 (Ministrial Segment)</td> </tr> <tr> <td>- 국가별 CRVS 추진시 우선순위 발표 및 선언문 채택</td> </tr> </table>	고위급 회의 (Senior officials segment)	- 선언문 검토 및 국가별 실천 전략과 성과 발표	각료급 회의 (Ministrial Segment)
고위급 회의 (Senior officials segment)				
- 선언문 검토 및 국가별 실천 전략과 성과 발표				
각료급 회의 (Ministrial Segment)				
- 국가별 CRVS 추진시 우선순위 발표 및 선언문 채택				
11.29.(토)	방콕(태국) 출발 → 인천 도착			

II

회의 안건

□ 고위급 회의 : Senior Officials Segment

○ 아태지역 CRVS 주요 이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 CRVS 중요성과 각 국가들의 현황 및 발전사례, CRVS 시스템 향상을 위한 ICT 발전방안, 응급상황에서의 등록제도 및 등록제도 누락에 대한 대처사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과 기금 마련 필요성

○ 장관급 선언문 검토 (우리나라 발표)

- 장관급 선언문 초안에 대한 내용 보완 및 문구 수정

○ 국가별 실천 전략과 성과 발표 (우리나라 발표)

- 국가별 CRVS 추진 현황과 그 동안의 성과, 향후 발전 방향과 실천 전략 등을 발표

□ 각료급 회의 : Ministerial Segment

○ Post-2015 어젠다 달성을 위한 CRVS의 역할 토론

- UN의 post-2015 개발의제로 CRVS가 논의됨에 대하여 아태 지역에서의 CRVS 의미와 대처방안 등을 토론

○ 국가별 CRVS 추진 시 우선순위에 대한 발표 (우리나라 발표)

- 국가별 CRVS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와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내용에 대하여 발표

○ 장관급 선언문 채택



주요 회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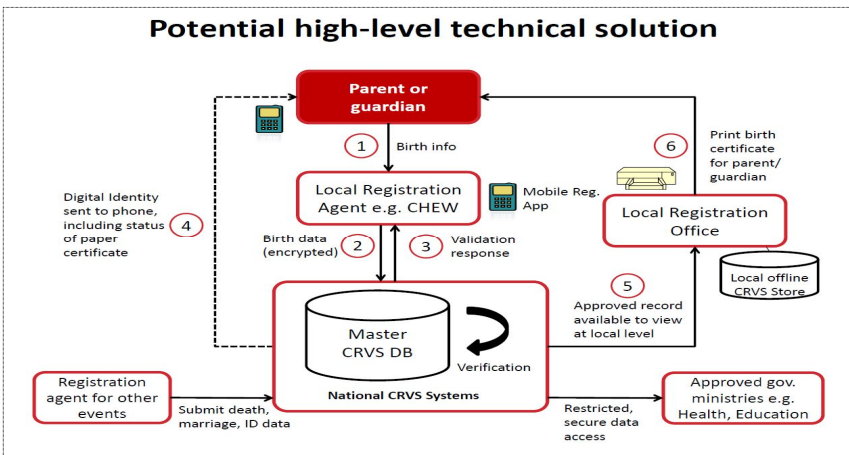
□ 고위급 회의 : Senior Officials Segment, 11.24.(월)~26.(수)

1) 개막사

- CRVS는 국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ESCAP은 올 4월부터 실무그룹을 결성하여 정부의 책임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동 장관급 선언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실행되기를 희망함

2) 아태지역 CRVS 주요 이슈 발표 및 토론

- (CRVS 중요성과 시스템 관련) CRVS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CRVS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발표
 - 개인, 병원, 등록기관, 통계청으로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통한 자료 연계활용



- (위기시의 CRVS 운영) 응급상황에서의 등록제도 실시와 국적이 없는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사례에 대한 발표
 - (필리핀) 태풍 하이옌(Yolanda)으로 인한 등록제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식 등록신고 등 정책 추진 사례
 - (태국) 국적이 없거나 제때에 등록되지 못하는 출생에 대하여 출생아 권리보호를 위한 등록제도 방법 등을 발표

Mobilized Government Resources

- Local Government Units (LGUs) waived registration fees for civil registration by enacting ordina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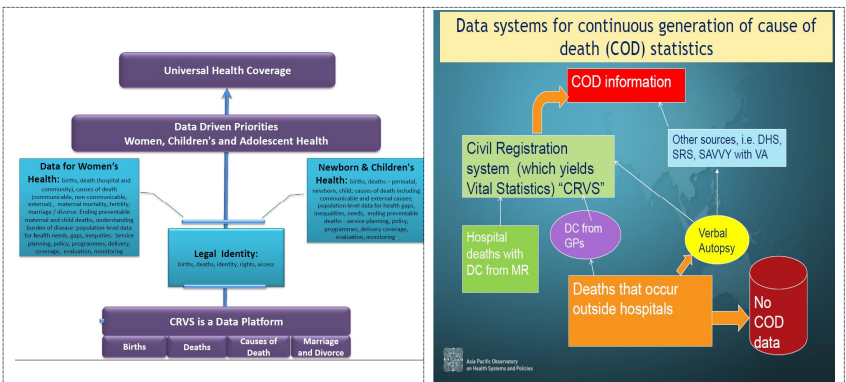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 Reconstruction
- Omnibus Certification



- (여성과 아동의 CRVS 대한 논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대한 통계의 중요성과 출생과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등록자료 수집과 활용 필요성을 논의



3) 장관급 선언문에 대한 검토

- 한국 대표는 장관급 선언문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안하여 동 제안 모두가 선언문에 반영

① 장애인협약 관련 (외교부 의견)

- 한국이 장애인 권리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동시에 장관급 선언에서 장애인 협약에 대한 내용을 추가

⇒ PP2에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삽입

[PP2]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② "제1차 국제 주민등록 관리 회의" 내용 삽입 관련

- 2014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 주민등록 관리 회의 (행정자치부 주관)"가 CRVS와 관련이 크며 국제적 논의의 성과이므로, 이를 선언문에 각주로 반영

⇒ PP19의 각주 11로 동 내용을 삽입

[PP19, 11] Such as the First International Identity Management Conference held on 23-25 September 2014 in Seoul, which recognized that civil registration is a basis for civil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and that an organic link between civil registration and identity management is critical."

4) 국가별 실천전략과 성과 발표

○ 약 30개 국가에서 CRVS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전략 발표

○ 한국대표단 발언 내용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대법원 호적신고제도와 연계하여 동일한 신고서식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음.

1997년부터 지자체 담당자와 통계청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구동태통계입력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2004년부터는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통계청 인구동태시스템을 연계하여 통계를 생산함.

또한 병원, 경찰청 등 각 관련 기관의 자료를 추가로 입수하여 사망원인 등 인구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음.

특히, 내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망원인분류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고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사망원인 분류를 향상시킬 예정임.

이와 같은 CRVS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함.

○ 일본대표단 발언 내용

일본은 인구통계 자료를 정부와 사회기구 등의 협조를 통해 사용해 왔으며 오랜 시간동안 등록제도와 인구통계의 발전에 주목하여 많은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있음.

일본 등록제도는 기본주거등록시스템과 가족등록제도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음.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가 포함된 기본주거등록정보는 등록시스템에 기록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반면, 가족등록부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출생, 사망, 혼인, 영아사망 사건을 기록함.

인구동태 통계조사는 가족관계 등록 법률 등에 따라 매년 전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체 사건을 수집함.

중앙정부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를 생산하며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의 세부 통계자료를 생산함.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관심사임.

○ 필리핀대표단 발언 내용

필리핀의 신분등록은 1930년 신분등록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짐.

필리핀 정부는 매년 등록부를 강화하고 있으며 1) 무슬림과 원주민의 관습과 전통의 향상 2) 혼인외자 또는 미성년 모의 출생신고에서 차별을 없애고 3) 부모를 알 수 없는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등록 허가 등에 대해 노력하여 모든 필리핀 인구를 파악하고자 함.

2000년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저장관리하며 주민등록자료는 인터넷과 전화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음.

필리핀 통계청은 지방 주민등록기관과 다른 국가기관, 외교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는 건강프로그램 정책수립 근거, 사망원인, 모성사망, 인구추계 등에 사용됨.

○ 호주대표단 발언 내용

호주 통계청은 국가주민등록과 통계향상 위원회*를 지난 2013년에 만듦.

* NCR SIC : NATIONAL CIVIL REGISTRATION AND STATISTICS IMPROVEMENT COMMITTEE

이 위원회는 호주 CRVS 발전을 위한 유용한 실천전략을 개발함.

호주의 주요 이슈는 1) 국가내의 출생, 사망, 사망원인, 혼인자료의 조화, 2) 시의성있는 자료 공유 및 연계 3) 고품질의 인구 및 사망통계 생산임.

또한 호주 브리즈번에서는 호주원주민의 등록을 향상시켜서 그에 대한 출산율과 사망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원주민과 그외 사람간의 차이를 좁히는데 사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브리즈번의 사례는 아태지역의 좋은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각료급 회의 : Ministerial Segment, 11.27.(목)~28.(금)

1) 기초연설 (Dr. Shamshad Akhtar ESCAP 사무총장)

- CRVS 시스템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기반으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기본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모성 및 유아 건강, 남녀성비, 원사망 원인 등에 있어 많은 데이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UN ESCAP은 “Get everyone in the pictur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각국이 CRVS 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금번에 개최되는 각료급회의에서 선언문채택, 지역별실행계획을 수립하여 CRVS 시스템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를 기대함

2) Post-2015 어젠다 달성을 위한 CRVS의 역할

【세션구성의도】

지난 2014년 4월 유엔총회 산하 SDGs 워킹그룹에서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법적지위부여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결정은 CRVS가 새로운 글로벌 어젠다 달성에 있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세션을 통해 CRVS가 post-2015 개발의제에 달성되어야 할 목표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패널참석자(사회 : ESCAP 사무총장)
 - Mr. AHM Mustafa Kamal(방글라데시 기획부장관)
 - Mr. San Lwin(미얀마 대통령실, 차관급)
 - Dr. Haji Wan Junaidi bin Tuanku Jaafar(말레이시아 내무부차관)
 - Ms. Veena Bhatnagar(피지 보건의료부 차관보)
 - Mr. Khanh Ngoc Nguyen(베트남 법무부 차관)

- **【ESCAP 사무총장】** CRVS와 관련하여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은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것, 둘째, CRVS에서 작성되는 정보는 단순히 하나의 SET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연관되는 정보, 지역별 등과 같은 세부적인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함. 다시 말하지만 CRVS는 UN의 post-2015 개발의제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반기문 총장을 비롯한 고위급패널회의에서도 중요성이 제기되었음.

그 보고서에서 언급된 여러 내용 중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은 “Leave no one behind”이고 CRVS는 이의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결국 CRVS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고 post-2015 개발의제의 목표달성 및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질 것임

- **【사회자】** 이와 관련하여 CRVS의 필요성 등이 현재 마련중인 post-2015 개발의제에 충분히 반영되어있다고 생각하는가?
 - **(방글라데시)**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음. “No development without security, no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의 구성원이 국가에 의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제대로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post-2015 개발의제는 충분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판단됨. 국가별로 볼 때 예산상의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SDGs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UN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주어진 목표를 주어진 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미얀마)** 법적지위의 부여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 이를테면 교육, 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누리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
 - **(말레이시아)** 1970년 이후 말레이시아는 인종 간의 갈등 해소,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해소에 많은 정책들을 펴왔음.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을 수립하면서 소위

"National Development Goals"을 만들었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등록제도는 큰 역할을 하였고 특히 말레이시아 반도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 국가영토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 **(피지)** post-2015 개발의제가 CRVS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됨. 왜냐하면 의제의 내용이 Good Governance, 효과적인 국가체계(effective national institutions)와 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되어있고 CRVS 시스템 구축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UN은 이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의제에 포함시켜야하며 CRVS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CRVS와 같은 의제가 post-2015 개발의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임.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러한 통계가 국가간 국내의 경우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3) 국가별 CRVS 추진시 우선순위와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 약 30개 국가에서 CRVS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전략 발표
- 한국대표단 발언 내용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CRVS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상당히 신뢰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향후 더욱 발전시키고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음.

그중 현재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바로 사망신고와 관련된 것인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약 75%의 사망이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집 등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법에 따라 시체검안서 등과 같은 증명서가 발급되기는 하지만 그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재의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대한민국의 CRVS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CRVS 시스템구축 작업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드리고자함.

첫째, 통계법 등에 출생, 사망신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CRVS 시스템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임. 둘째, CRVS가 중요하다고 말만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에 대해 사례를 만들어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

대한민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전부터 공공기관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응답부담이 커짐은 물론 예산의 낭비도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3.0”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이들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CRVS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개체식별정보인 것임.

셋째, CRVS를 운영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하는데 특히 등록자료에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활용하면 할수록 개인정보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안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임.

○ 일본대표단 발언 내용

MDGs 달성의 종착점에 있는 이 시점에 통계발전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등록시스템은 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1872년 현재 시스템의 모태가 된 가족등록법 시행).

현재는 기본주거등록시스템과 가족등록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이름, 출생일, 성별, 주소가 기록되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료보험과 같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가족등록 시스템의 경우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로 출생, 사망, 결혼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태통계시스템의 경우는 1899년에 확립되었는데,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을 서로 분리된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보건센타에 신고된 자료는 지방정부에 보내지게 되고 이는 다시 보건·고용·복지부에 보내져서 전체적으로 모이게 됨. 취합된 자료는 출산력 등의 다양한 분석을 위해 사용됨.

아태 국가들의 경우 상당부분의 MDGs가 달성되었지만 아직도 달성해야할 목표들이 남아있고 앞으로 post-2015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도를 측정하는데 통계의 역할은 중요함.

○ 호주대표단 발언 내용

호주는 CRVS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출생, 사망, 사망원인과 같은 최소한의 국가 데이터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위해 CRVS 시스템의 가치와 이해도를 증진시켜왔음.

현재 호주가 처해있는 주요 문제들을 보면, CRVS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데 지역적인 관할문제(지방정부별로 서로 다른 법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가 있으며, ICT 시스템의 발달정도가 서로 달라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로간의 인적 물적자원의 발전정도의 차이가 있음

그리고 입양과 관련된 부분이 Regional Action Frame에는 반영이 되어있지만 호주의 등록관련 제도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태국대표단 발언내용

현재 태국 CRVS 시스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임.

먼저 사망원인 코딩에서 R코드의 비중이 '07년 38%에서 '11년 34%로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WHO에서 권하고 하고 있는 10%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

둘째, 병원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학적 지식이 없는 마을의 촌장이나 행정공무원들에 의해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통계작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진료의 도입, 병원인력의 확충 등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

IV

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 사항

□ 장관급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검토

- 선언문에서는 2015년부터 10년간 CRVS 시스템 개발과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2024년까지 공동목표를 완수하도록 함
 - 개인의 출생과 사망, 다른 동태사건에 대한 신분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기록에 의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동태통계를 공표
- 우리나라는 UN 권고안에 따라 등록제도와 동태통계를 연계하여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이미 완료된 상태
 - 추가적으로 CRVS와 관련된 기관인 대법원,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번 선언문은 UN ESCAP 71차 위원회(2015년 예정)에 제출

<장관급 선언문 주요 내용(요약)>

2014. 11. 24~28일에 UN ESCAP과 각국 대표는 방콕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CRVS에 대한 장관급 회의에 모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법 이전에 개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재확인하고 관련 규약과 협약 등을 상기함.

1. 2024년까지 아태지역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부와 건강,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선언
2. 우리의 공동 비전 실현은 다음의 목표들을 실현하여 이뤄지도록 단언

- (a) 목표1 : 출생, 사망과 다른 동태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신분등록
 - (b) 목표2 : 모든 개인은 신원과 신분상태, 권리보장을 위하여 출생, 사망, 다른 동태사건의 신분등록에 대한 법적인 기록이 제공되어 짐
 - (c) 목표3 : 등록기록에 기반한 정확하고 완벽하고 시의성있는 동태통계 (사망원인 포함)가 생산되고 공표됨
3.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아태지역의 CRVS 10년간의 우리의 공동 비전을 실현하도록 선언
 4. 우리의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와 개발 파트너의 노력에 가속을 더하도록 CRVS 지역 실천 프레임워크를 지지
 5.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국가별 목적이 모든 관계 기관에 의해 이뤄지도록 지역 실천 프레임워크의 시행에 전념
 6. 또한 2015년말까지 지역실천프레임워크의 시행 보고서 작성과 2024년을 위한 국가목표 마련, 모니터링을 포함한 국가 향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가 CRVS 협력 체계를 마련
 7. 사망원인을 알아내고 사망등록을 연계하는 국가적인 능력을 키우고 소외되고 동떨어진 사람 사이의 동태사건 등록을 보장하고 신분등록의 모든 장벽을 없애기 위한 특별한 주의에 대한 결정
 8. CRVS 향상을 위한 개발파트너의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도움 요구
 9. 모든 관련 개발파트너가 지역실천프레임워크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파트너십에 대한 기여를 요청
 10. 지역실천전략과 위원회를 통해 작성되는 아태지역 CRVS 전문가 그룹의 10년 간에 대한 관리를 지정함
 11. 지역실천프레임워크의 향상에 공헌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신분등록의

아태지역네트워크의 개발과 지원을 요구함

- 12.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서 CRVS의 포함되도록 지지하기 위한 구
성원과 관계기관이 노력함
- 13. CRVS시스템의 향상이 UN개발프레임웍(UNDAF)에 포함되도록 언급
- 14. 사무국에 요청
 - 지역실천전략 실천을 위한 사무국의 지원과 협력 요청 및 71차 원회
(2015년 예정)에 이번 장관급 회의의 결과물을 제출

□ 국가목표의 설정 및 보고서제출

- CRVS 향상을 위한 3가지 목표의 세부 수행사항에 대한 국가별
실천목표에 대한 보고서를 ESCAP 사무국에 제출
 - 우리나라는 세부 수행사항에 대하여 모두 이미 실천하고 있으
므로 목표 설정 이외에 추가적인 협력과 향상 과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필요
- 국가별 보고서 제출 및 ESCAP의 검토 일정

연도	수행사항
2015	국가별 기준보고서 사무국에 제출
2016	기준전략내용 분석
2019	국가별 중간보고서 사무국에 제출
2020	중간보고서 검토 실시
2024	국가별 최종보고서 사무국에 제출
2025	최종검토 실시

- 기준보고서 내용 : 최신 국가별 목표치 설정과 현황자료, CRVS
향상을 위한 활동 보고서, 국가별 평가내용 등
-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 : 국가별 현황자료, CRVS 향상을 위한

- 국가실천목표관련 현황(향후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 Regional action framework >

Goal 1: Universal civil registration of births, deaths and other vital events
1.A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births 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in the given year are registered. ⁹
⁹ Given that Member States endorsed, at the sixty-seventh World Health Assembly, “Every Newborn: An Action Plan to End Preventable Death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14), annex 1), which contains the strategic objective that “every newborn needs to be registered, and newborn and maternal deaths and stillbirths need to be counted”,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should aim to register every birth within 28 days of occurrence, and reflect this in their national target for target 1.A.
1.B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children under 5 years old 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have had their birth registered.
1.C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all individuals 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have had their birth registered.
1.D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all deaths that take place 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in the given year are registered.
1.E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all deaths recorded by the health sector 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in the given year have a medically certified cause of death recorded using the international form of the death certificate.

(우리나라 현황) 출생과 사망신고의 누락은 거의 없음

- 전국의 기관을 통하여 전국 출생과 사망에 대한 신고 가능
- **(출생)** 출생 후 한달 내에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부모가 없는 아동은 아동을 발견한 사람에 의한 **기아발견신고**로 등록
 - * 2000년 출생아에 대한 2010년까지 지연신고율(10년간의 지연율)은 0.9% 수준(적기 신고 99.1%), 2013년 기준 99.5% 수준
- **(사망)** 사망 후 한달 내에 **사망신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기관에서 **무연고사망신고**로 등록
 - * 사망신고에서는 반드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를 첨부
(2013년 기준 의사발급 증명서 첨부율은 98.8%)
 - ** 1970년대 사망신고율은 70% 수준, 2012년 기준 99% 수준

Goal 2: All individuals are provided with legal documentation of civil registration of births, deaths and other vital events, as necessary, to claim identity, civil status and ensuing rights

- 2.A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all births registered 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are accompanied with the issuance of an official birth certificate that includes, as a minimum, the individual's name, sex, date and place of birth, and name of parent(s) where known.
- 2.B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all deaths registered 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in the given year are accompanied with the issuance of an official death certificate which includes, as a minimum, the deceased's name, date of death, sex, and age.

(우리나라 현황) 출생과 사망 신고자료는 해당 내용 모두 포괄하고 있음

- **(출생 등록사항)** 출생자 이름, 성별, 출생일시, 출생장소, 출생자 주소(주민등록예정지), 부모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사망 등록사항)** 사망자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 일시, 사망장소, 연령(출생일자와 사망일자로 산출)

Goal 3: Accurate, complete and timely vital statistics (including on causes of death) are produced based on registration records and are disseminated

- 3.A By ... (year), annual nationally representative statistics on births – disaggregated by age of mother, sex of child, geographic area and administrative subdivision – are produced from registration records or other valid administrative data sources.
- 3.B By ... (year), annual nationally representative statistics on deaths – disaggregated by age, sex, cause of death defined by ICD (latest version as appropriate), geographic area and administrative subdivision – are produced from registration records or other valid administrative data sources.
- 3.C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deaths occurring in health facilities or with the attention of a medical practitioner have an underlying cause of death code derived from the medical certificate according to the standards defined by ICD (latest version as appropriate).

- 3.D By 2024, the proportion of deaths coded to ill-defined codes will have been reduced by ... per cent compared with the baseline year.¹¹
- 3.E By 2024, at least ... per cent of deaths taking place outside of a health facility and without the attention of a medical practitioner have their underlying cause of death code determined through verbal autopsy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3.F By ... (year), key summary tabulations of vital statistics on births and deaths using registration records as the primary source, are made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in electronic format annually, and within one calendar year.
- 3.G By ... (year), key summary tabulations of vital statistics on causes of death using registration records as the primary source, are made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in electronic format annually, and within two calendar years.
- 3.H By ... (year), an accurate, complete and timely vital statistics report for the previous two years, using registration records as the primary source, is made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우리나라 현황) 출생, 사망통계를 매월과 매년 공표 중임

- (수집 방법) ①출생(출생신고+기아발견신고) 및 사망(사망신고+무연고신고)신고 등록자료와 ②병원 등 22개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 별도로 입수한 자료를 활용
- 작성 통계
(출생) 전국 및 지역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생통계를 매년 작성 및 공표 (다음해 2월 잠정, 8월 확정)
(사망) 전국 및 지역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를 매년 작성 및 공표 (다음해 2월 잠정, 9월 확정)
 - * 사망원인통계는 최신 ICD10 기준으로 작성, ICD에 따라 작성되므로 원인분류가 잘못되거나 과거 분류를 사용하지는 않음
 - ** 의료기관(병원이송 중) 외 사망자(26.7%) 중 4.4%는 인우증명서류 첨부, 사망자의 검시(구두검시, 부검 등) 목표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 (공표 주기) 전국 및 시도 인구동태(출생,사망,혼인,이혼)건수는 매월 속보로 공표, 매년 연간 상세통계를 공표 (작성시점 이후 1년 내)
- (공표 방법) 통계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및 연보 게재

V

검토사항

□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우리나라의 CRVS는 각 정부부처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제도 주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동태 사건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업무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제도 주관, 출생자와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말소, 국외자 등에 대한 관리 업무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작성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사망원인, 국내이동, 국제이동통계)
- (보건복지부) 병의원 관리 및 인구동태통계 주요 활용 부처
- 각 정부부처에서 CRVS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특히, ESCAP 보고서 작성과 국가전략 수립 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도담당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함
 - * ESCAP 전문가 그룹에서 우리나라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 '14년 9월 서울 국제주민등록회의 개최로 행자부와 ESCAP 연락관계 유지
- ⇒ 관련 논의를 위해 해당기관(복지부, 행자부, 외교부 등)과 협의 실시('15.3월중)

참고1-1 Senior Officials Segment 개막사

□ 개막사

- 아태지역 43억 인구가 제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며, 민주적 체계 세우는데 정부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역내 국가들이 CRVS 관련 재정적 자원분배의 어려움이 있음.
- 아태지역 1억 3천 5백만 5세 미만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전체 아동 인구보다 많은 인구임.
- 이것은 단순히 공식적인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닌, 복지, 법적 권리와 투표권 행사를 못하고, 사회보장, 자신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많은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하게 됨.
- WTO 추정에 따르면 아태지역 2/3 사망인구가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이것은 정부의 사회 및 공공보건 프로그램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함.
- CRVS는 국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기본 권리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ESCAP은 올 4월부터 실무그룹을 결성하여 정부의 책임 및 감독 강화 방안에 관하여 증거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음.
-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동 장관급 선언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실행되기를 희망함.

참고1-2 Ministerial Segment 개막사

□ 기조연설 (Dr. Shamshad Akhtar ESCAP 사무총장)

- CRVS 시스템은 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또한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국적을 취득하는 등과 같은 사회로부터 편익을 얻는데 매우 중요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인 약 1억 3,500만명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제대로 된 사망원인조사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 등록제도는 그러한 사건(출생, 사망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기본통계를 생산할 수 있음
-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모성 및 유아 건강, 남녀성비, 원사망 원인(Underlying cause of death) 등에 있어 많은 데이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결정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 UN ESCAP은 UNDP, UNSD, UNFPA, UNICEF, WHO, World Bank 등과 협력하여 “Get everyone in the picture”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각국이 CRVS 시스템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금번에 개최되는 각료급회의에서 선언문 채택, 지역별실행계획을 수립하여 CRVS 시스템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를 기대함

□ 환영사 (H. E. Gen. Anupong Paojinda, 태국 내무부장관)

- 아태지역 CRVS 관련 최초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음, 아태지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출생과 사망등록, 여성과 아동을 위한 혼인등록 등 등록제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각 국가 대표단에서 공유하고 각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의 아태지역 CRVS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길 바램

참고2	장관급 선언문 내용
-----	------------

**Ministerial Declaration
to “Get every one in the picture” in Asia and the Pacific**

2014. 11. 24~28일에 UN ESCAP과 각국 대표는 방콕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CRVS에 대한 장관급 회의에 모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법 이전에 개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재확인함.

출생한 모든 아동은 차별없이 즉시 등록되어지도록 명시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모든 이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에 관한 규약“, ”장애인 권리에 대한 협약“을 상기함.

또한 모든 결혼은 관할기관에 의해 적절하고 공식적인 등록부에 등록되어지도록 보장된 “결혼신고, 최연소결혼에 대한 협약”을 상기함.

게다가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와 지표를 인정

하는 “공식통계기본원칙”을 확산하는 “UN 총회 결의안 68/261 (2014년 6월)을 상기함.

2015년 이후 개발의제 내용에서 개인에 대한 공개되지 않고 비집계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료형평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CRVS와 건강정보시스템의 강화에 의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촉구되어진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WHA67.14 (2014년)”을 상기함.

가장 취약한 그룹에 맞춰진 정책 향상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신분등록과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위원회 결의안 67/12, 69/15”를 상기함.

모든 신생아는 등록되어야 하고 신생아와 모성사망, 사산은 측정되어야 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운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WHA67.10(2014)”을 수용함.

또한 무국적자 등 신분 등록이나 관련 기록이 없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분등록과 기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UN 난민고등 판무관의 집행위원회의 신분등록에 대한 결언(2013년)”을 수용함.

신분등록은 국가법률에 따른 출생, 사망, 태아사망, 혼인, 이혼, 입양, 친생자인정, 인지를 포함한 동태사건의 발생과 특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영구하며 강제적이고 보편적인 등록인 것을 환기함.

또한 국가법률과 행정부의 합의에 의한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시스템은 내부무, 사법부, 복지부, 통계청, 지방정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책임으로 공유됨을 환기함.

보편적이고 공감되는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인간중심 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가짐을 단언함.

- 개인의 법적 신원, 신분상태와 가족관계, 그리고 건강과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는 향후의 사회보호 향상을 위한 개인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을 제공
- 잠재적인 참여와 책임을 통한 공공기관의 강화 그리고 국가인구 자료, 국가 신원 프로그램과 전자정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
- 특히 소외되고 동떨어진 사람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및 건강의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과 방지를 포함하는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건강과 인구에 대한 동태통계를 제공
- 신생아와 태아 건강 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포함한 사망원인 검토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보편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 성과 연령, 지역적으로 세분화된 통계와 가족관계와 신분상태를 입증하는 기록의 제공을 통한 성평등과 여성권리향상 촉진
- 출생지에 대한 기록 연결을 포함한 난민에 대한 해결과 함께 아동노동, 미성년혼인, 인신매매, 무국적자의 위기에 대한 방어와 감소
- 인권 계획, 재난 위기 감소와 관리, 재난 대응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에서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5세 미만 1억 3천 5백만 아동을 측정하는 것과 50만의 다른 등록사건이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목함

지역에서의 국가의 대부분이 관련되는 국제 기준과 권고에 적절한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음에 주의

국가개발 계획과 관련된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협력체를 포함한 모든 관계 기관의 CRVS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위한 확산

지방이나 외곽, 경계지역, 소수자, 이민자, 비시민, 난민자, 무국적자, 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 소외되고 동떨어진 사람의 신분등록 정도를 올리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강조

또한 의료증명서와 ICD에 의한 사망원인분류, 구두부검과 보건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사망원인 결정과 사망등록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확보하는 특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인구동태시스템의 UN 권고안과 공식통계기본원칙에 따른 인구동태통계의 생산을 위한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강조

지지, 기술적인 조언, 능력배양, 정보의 측정, 조사, 개혁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교류 등을 통한 국가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개발을 지지하는 국제적이고 지역적이며 세부적인 기관과 중요한 역할을 강조

또한 공공과 개인 파트너십을 포함한 비정부조직과 시민사회, 전문적인 관계 기관, 언론과 개인영역에서의 국가적 전략에 따른 신분등록과 동태통계의 향상과 개발을 위한 특별한 역할에 대한 강조

신분등록과 동태통계의 기초에 대한 국가적 목표의 수립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책임감이 CRVS의 향상을 촉진한다는 믿음

CRVS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성원과 관계 기관에 의한 만들어진 기존의 노력에 대한 인정

또한 국가적이고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에서 CRVS 향상 실천을 위한 자금의 강화 등 최근의 노력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CRVS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적인 혁신의 일부분으로서 개발 파트너에 의해 제공되는 굳건한 지지에 대한 인정

CRVS 향상과 세부지역 도전을 선언하는 선언문의 향상을 위한 세부지역 프로그램의 가치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

보편적인 신분등록 인식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 및 공유기술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설립에 대한 인지

아태지역과 아프리카, 중남미, 동지중해를 포함한 다른 지역의 개발국가의 가입을 통한 CRVS의 향상력을 수용

지역전문가그룹의 아태지역 CRVS 지역 실천 프레임웍의 개발과 장관급 회의 준비 감독에 서의 노력에 대한 격려

주관기관으로서 태국과 장관급회의 협력기구에 감사를 표함

1. 2024년까지 아태지역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부와 건강,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신분등록과 동태통계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선언
2. 우리의 공동 비전 실현은 다음의 목표들을 실현하여 이뤄지도록 단언

- (a) 목표1 : 출생, 사망과 다른 동태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신분등록
- (b) 목표2 : 모든 개인은 필요에 따라 신원과 신분상태, 권리보장을 위하여 출생, 사망, 다른 동태사건의 신분등록에 대한 법적인 기록이 제공되어 짐
- (c) 목표3 : 등록기록에 기반한 정확하고 완벽하고 시의성있는 동태통계 (사망원인 포함)가 생산되고 공표됨

3.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아태지역의 CRVS 10년간의 우리의 공동 비전을 실현하도록 선언

4. 우리의 공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와 개발 파트너의 노력에 가속을 더하도록 CRVS 지역 실천 프레임웍을 지지

5.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국가별 목적이 다음의 실천 지역에서 모든 관계 기관에 의해 이뤄지도록 지역 실천 프레임웍의 시행에 전념

- (a) 정치적 약속 (b) 공공 계약, 참여와 수요 생성 (c) 협력
- (d) 정책, 법률제정과 규제의 구현 (e) 인프라와 자원 (f) 생산, 실천과 개혁의 관리 (g) 동태통계의 생산, 공표와 사용

6. 또한 2015년말까지 지역실천프레임웍의 시행 단계와 2024년을 위한 국가목표 마련, 모니터링을 포함한 국가 향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가 CRVS 협력 체계를 마련

7. 사망원인을 알아내고 사망등록을 연계하는 국가적인 능력을 키우고 소외되고 동떨어진 사람 사이의 동태사건 등록을 보장하고 신분등록의 모든 장벽을 없애기 위한 특별한 주의에 대한 결정

8. CRVS 향상을 위한 개발파트너의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도움 요구

9.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개발파트너가 지역실천프레임웍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파트너십에 대한 기여를 요청

(a)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브리지번 관계 그룹 등 CRVS 향상을 위한 소지역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지역기관

(b) CRVS에 대한 그들의 계획과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정책과 일직선으로 있는 개발 조력에 대한 개발협력기관

(c) CRVS 향상을 지지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세계은행 그룹,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은행과 다른 재정 기관

(d) UN개발그룹, 국가팀, 재난응급관리와 대응팀과 같은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CRVS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UN 시스템

(e) 소외되고 동떨어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NGO, 시민사회단체 등

(f) 공공-개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영역

(g) 최상의 사례와 기술적 자원을 수집하고 개발, 측정하기 위한 학계와 조사기관, 전문가집단

10. 지역실천전략과 위원회를 통해 작성되는 아태지역 CRVS 전문가 그룹의 10년 간에 대한 관리를 지정함

11. 지역실천프레임웍의 향상에 공헌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신분등록의 아태지역네트워크의 개발과 지원을 요구함

12.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서 CRVS의 포함되도록 지지하기 위한 구성원과 관계기관이 노력함

13. CRVS시스템의 향상이 UN개발프레임웍(UNDAF)에 포함되도록 언급

14. 사무국장에 요청

(a) 현재 선언문과 지역실천프레임웍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다른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구성원과 기관에 지원함을 우선순위로 부여

(b) 지역실천프레임웍의 향상을 위한 사무국 차원의 지원을 제공

(c) 2020년과 2025년에 지역실천프레임웍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검토관리

(d) CRVS시스템의 향상을 사무국의 중요업무로 관리

(e) 지역파트너십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 지지를 보장하기 위한 개발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연계

(f) 71차 위원회(2015년 예정)에 이번 장관급 회의의 결과물을 제출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Action Framework

Thank you Mr. Chair,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The Republic of Korea began collecting vital statistics back in 1962. Since the 1970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gun to use vital events registrations form administered by the Supreme Court Korea. For example, birth registration forms have been intergrated with family registration items and vital event items. From 1997, Statistics Korea has built the vital events entering system for both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2004, Statistics Korea established a link amongst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s to produce vital statistics. Each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access to the family registration items in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and among them, the vital event items are stored as a file. Then, the file uploaded to vital events entering system by each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With the uploaded file Statistics Korea complies and edits the data to analyze and produce vital statistics.

In addition to the civil registrations, Statistics Korea also incorporates other data such as death of infants from the hospitals, crematory data, police data from National Police Agency as well as data from health institution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vital

statistics and is planning to increase the use of administrative data to produce statistics on cause of death. The aim of this is to produce more accurate statistics on cause of death. As differ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re involved and use different codes to the same cases Statistics Korea also created a method to recognize new linking codes to find the same person from the data collected from different institutions.

Statistics Korea has a classification system for cause of death based on ICD10. Next year, it will introduce a new classification system on cause of death to enhance the quality of data coding and to measure up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o effectively carry out these strategies, Statistics Korea with the concerned ministries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develop the relevant systems, to make legal changes to promote use of administrative data and to strengthen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data providers.

Policy priorities for improving CRVS

Thank you Mr. Chair,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A Korean delegate mentioned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comparably long, robust and reliable the CRVS system. It was not easy for us to a build such a system but still we have a long way to go.

One of the issues to be resolved urgently is about the death report.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about 75% of deaths are occurred at health facilities such as hospital, but other 25% are occurred at other place such as house, etc.

In the latter case it is mandatory by law to attach the death certificate when reporting, however the quality of such document is relatively poor and sometimes underlying cause of death is decided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I think it is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by encourag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agencies.

And from now, based on the Korea's experiences, I would like to make few comment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I think most countries have statistics law, but I am not sure those

countries force all births and deaths to be recorded.

One of the main factors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set out and enhance the CRVS system effectively is the presence of powerful statistics law and related legislations.

Secondly, everybody says the necessity of the CRVS system. However, to make the goals achieved efficiently and expedite the implementation of “get everyone in the picture” project, I think we can say how valuable this job is and should suggest benefits clearly.

In Korea, in the past and even still now, one of the serious problems is that the useful and critical information is produced and kept by relevant agencies respectively.

Absolutely this is too burdensome for citizens who are responsible for responding and wasteful by spending too much money to collect information.

The one of the main policies of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is the sharing information between public agencies. By sharing and integrating the information, I believe that we can make them more valuable and definitely improve the decision making. Personal identification based on the CRVS system can play a critical role to this.

I think each country need to find the benefits of implementation of CRVS and should show them to the related authorities.

Thirdly, probably we could encounter some unexpected problems on the way of implementing the CRVS.

Recently in Korea,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the security of

private information. The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which shows some personal information is produced by government but private sector can use that because it is needed to join the economic activity such as the on-line banking.

As it is used often, so grows the possibility of being used for crime. Therefore we are being asked to take measures such as introducing the alternative numb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personal registration records.

Right now, our major goal is to establish the CRVS, however at the same time we should think about the negative points and prepare to overcome.